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 가. 허가번호 : 제88호
- 나. 업체명 : 제일산업사
- 다. 대표자 : 박현일
- 라. 기타 : 에완용 의약품제조 제조

2. 제조(수입)업체 대표자 변경

업체명	당 초	변경 후
진우약품	함영만	윤부자
샘골축산	조성룡	김인숙
인양산업	박신호	권정혁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농림수산부는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요령' 제4조에 의거 (주)제일제당 사료본부(대표 : 최명옥)를 1996년 1월 31일자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4. 96년 유당 업체별배정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의 양허관계 적용 추천 한도량이 598.8톤으로 배정 되어 소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업체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배정량 증량에 대하여는 한국유가공협회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하고 있어 대량 수요업체의 요구는 추가 증량시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업체명	배정 요구량	배정 계획량
고려케미칼	25	17.5
과학사료	10	17.5
과학축산	8	8
남전물산	227.5	35
녹십자수의약품	10	10
대성미생물연구소	24	17.5
대한신약	420	52.5
등방	35	17.5
삼양약화학	50	17.5
서울신약	87.5	35
우성양행	19	17.5
유니화학	5	5
유한양행	16	16
이화약품	3	3
이글케미칼	5	5
제일화학	105	35
삼우화학	20	17.5
퓨리나코리아	1007.5	166.8
한국고킹	12	12
바이엘코리아	62.5	35
한동	55	35
한성약품	15	15
한풍산업	8	8
계	2,230.0	598.8

5. 유당 200mesh 오파 일선

동물약품 조합에서는 96년 동물약품제조용 유당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일선하고 있다.

구분	내용
업체명	양하무역
대표자	임정수
규격	Edible Grade 200mesh
공급가격	CIF BUSAN, US\$ 665 M/T
원산지	캐나다
공급자	G.VAN KAN TRADING COMPANY
공급기간	96. 1. 17 - 96. 12. 31
최소발주단위	3 M/T
전화번호	02 - 566 - 8337

6. 국가검정기준 추가안내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돼지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당단백 gI항체 감별용 진단키트', '젖소의 황색 포도상구균 유방염 불활화백신' 및 '닭 뇌척수염 생백신'의 검정기준들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7. 생물학적제제 밀봉용 알루미늄 비표캡 변경

협회에서는 96년 1/4분기부터 생물학적제제의 적절한 유통관리를 도모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수요자에게 사용상 편의를 제공코자 생물학적제제 밀봉용 알루미늄 비표캡을 아래와 같이 축종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 가. 변경전
금색, 은색, 청색바탕에 녹색, 적색글씨의 비표캡
- 나. 변경후
축종별 바탕색과 글씨색사용

구분	바탕색과 글씨색
소	은색캡에 녹색글씨
돼지	은색캡에 적색글씨
닭	금색캡에 적색글씨
개	금색캡에 녹색글씨

8. 국가검정 불합격품 폐기방법 변경

수입완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폐기시 기준에는 협회에 폐기입회 의뢰하고 협회 동물약품 관리요원의 입회하에 폐기토록 조치되었으나 이후 수입품목은 통관전 검정으로 인하여 폐기시에는 세관관계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토록 조치되었다.

9. 가축질병 예방 협의회 개최

96년도 가축질병예방사업 및 가축위생 정책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를 2월 13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및 가축위생과장, 수의과학연구소장 및 각 과장,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부장) 및 수의계장 및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96년 가축질병 예방사업계획 및 동질기 주요전염병 발생동향 분석과 가축위생 정책사업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10.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농림수산부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료 중 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공중 보건상의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료내 잔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을 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 1996-3 호 : 96. 1. 13.)하여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첨가사용기준'에 수 제되어 있는 약품에 대하여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 허용기준과 첨가사용기준간 기술적인 불일치 사항이 있어 단계별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배합사료공장의 사용기록 현상과 이로 인한 배출 감소 등이 예상 되어 이에 대한 회원업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국·내외 자료를 검색한후 첨가사용기준상 산란계용 배합사료 등에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한 미검출 자료 및 의견과, 사료업체 의견 및 동 허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1.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첨가 사용기준 잠정 조치

95년도에 협회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농림수산부에 건 의한 개정(안)은 수의과학연구소의 검토와 관련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이 수 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사용이 허용 되었다.

배합사료 품목	병어리용	용 계 용			
		전기	중기	후기 I	후기 II
센두라마이신	25	25	25	25	-

12. 동물용의료용구 적정수입을 위한 협조요청

우리 협회는 "통합공고"(상공자원부 고시 제1996-3호 : 96. 1. 19)에 의한 추천(요건확인)기관으로서 동물용의 약품 및 의료용구의 수입을 위한 적정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바, 조달청에서 공공 목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시험 동물 및 축산동물 관련 기자재 등이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요건에 직 합치 않아 수입통관이 보류된 상태에서 사후에 요건확 인이 신청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인의 불편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동 품목 수입시 국내등록 과정인 「수입 품목신고」와 수입을 위한 「요건확인」을 우리 협회에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조달청에 요청 하였으며, 조달청이 정부 물자 조달 기관인 점을 감안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림수 산부에 건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자격을 면제 하고 있음을 알렸다.

13. 96상반기 알찬거래선

96년도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제조용 원료에 대한 알 찬거래선 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다.

품목명	업 체 명	대 표 자	가 격(US\$)/KG	연 락 처
SULFAMETHAZINE, BP	마전물산	조 수 명	8.64	512-7199
SULPYRIN, DAB 9	마성상사	김 윤 종	6.17	533-0123
ALBENDAZOLE, 98% UP	제3무역	김 형 석	22.87	335-1151
CHLORAMPHENICOL, 98% UP	동주양행	김 종 하	34.45	587-5476

14. 유방염연고제 색소첨가

유방염 치료용 연고제제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시달 방 침에 이어 수의과학연구소로부터 색소첨가 제품의 균일 성을 높이고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 제제 생산에 소요되는 색소에 대한 총괄 생 산·관리 및 공급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업체 의견의 수렴하여 제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 되었다.

- 가. 첨가시기 : 96년 7월 1일
- 나. 첨가대상 :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연고제제
- 다. 색소종류 : 식용색소 청색1호(Brilliant blue F.C.F)
- 라. 색소크기 : 10 - 20 μm(micron)
- 마. 입자규격 : 149μm(micron) 이하
[색소포함한 연고제입자 크기]
- 바. 색소함량 : 25mg / 연고 / 분방
- 사. 기 나 : 허가사항의 일괄 변경등은 추후 시달

15. 협회 임시이사회 개최

협회는 2월12일 협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하여 2월 28일 총회에 상정할 각의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각의안에 대한 내용은 총회 개최안내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6. 조합총회 개최결과 안내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96년 2월 6일 중소기업 회관 10층회의실에서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및 수 의 과학연구소 소장과 기타 내외빈을 모시고 제11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가. 제1호 의안 : 95년 사업보고·수지결산 및 이익 잉여금처분(안) [원안의결]
- 나. 제2호 의안 : 96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원안의결]
- 다.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안) [원안의결]
- 라.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직 위	성명	업체명	비고	직 위	성명	업체명	비고
이 사 지	최종득	대보동물약품	신임	이 사	김송조	이글케미칼	유임
	신정재	과학사료	유임		이정협	이화학약품	유임
	김진구	고려케미칼	신임		서정범	제일화학	신임
	이각모	동 병	유임		김무진	중앙케미칼	신임
	민경우	삼양약화학	유임		김경한	태 경	유임
	이완상	삼우화학	유임		이오직	한 동	유임
	김충정	서울신약	신임		최죽송	한풍산업	유임
	홍원표	신일화학	유임		김식진	과학축산	유임
이 사 지	이정주	유니화학	신임	이 사 지	양용진	한국미생물	신임

17. 국가검정 항생물질제제 유효기간 적용

수의과학연구소는 1996년 3월 2일부터 국가검정 항생 물질제제의 유효기간을 원료의 유효기간에 종속되지 않고 품목허가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동물용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유효기간이 품목허가상의 제품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원료의 남은 유효기간에 맞추어 제품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설정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유효기간의 단축 문제가 인체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게되어 유효기간이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란 점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간 몇몇 업체에서 제기하여 온 유효기간 설정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각 제조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 놓았다.

유효기간은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최대기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각 제조회사는 원료용의약품의 도입에서부터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철저관리를 통해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의 약사감시 강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내 제품 경쟁력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8. 국가검정품종 산재 검정비 변경안내

협회에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검정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영세한 국내제조업체의 자금운영과 제품의 적정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종 산재(경구제, 사료첨가제)의 검정단축을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 검정화학과에 2명의 검정요원을 추가로 증원하여 운용토록 95년 2월 28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조치에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실험장비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며 인건비 등의 충당금으로 국내제조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종 산재 발제의뢰시 [검정지원비]를 별도로 협회에 납부토록 제출비용이 변경되었으며 검정요원의 견습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검정기간이 7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① 발 제 비 : 5원/개 (2,000개 이하는 10,000원)
 ② 검정지원비 : 20,000원/건
 (경구제, 사료첨가제에 한함)

나. 검정관련 비용 제출방법
 검정비, 발제비, 검정지원비를 협회에 일괄제출

다. 발제의뢰서 표기사항 변경
 ① 검정수수료
 ②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규칙" 별표에 의함
 ③ 발제비 ④ 5원/개(2,000개 이하는 10,000원)
 ⑤ 검정지원비 ⑥ 산재에 한하여 20,000원/건
 ▶ 발제비 및 검정지원비는 부가세 별도

19. 제 4 차 정기총회 개최

협회 제4차 정기총회가 1996년 2월 28일 중소기업회 관 2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부 가족위생과장 및 수의 과학연구소 검정화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다 음의 안건이 상정 처리 되었다.

제1호 의안 : 1995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 원안 의결

제2호 의안 :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원안 의결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안)

- 원안 의결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중소기업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변경 (아래참조) 기타사항

: 항생제 유효기간 변경내용 및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용 설명

▣ 협회 임원 현황

職 位	榮 體 名	姓 名	備 考
會 長	(주)한 등	李 五 植	
副會長	대보동물약품(주)	崔 鍾 默	신 임
副會長	(주)우성양행	金 永 來	
副會長	고려동물약품상사	金 祚 應	
副會長	협 회 상 근	咸 圭 茂	
理 事	(주)한풍산업	崔 竹 松	
理 事	(주)재일화학	徐 廷 範	
理 事	(주)이글케미칼	姜 承 朝	
理 事	삼우화학공업(주)	李 完 相	
理 事	과학사료(주)	愼 定 宰	
理 事	(주)서울신약	金 忠 正	
理 事	이화약품(주)	李 楨 協	
理 事	(주)유한양행	金 泰 薰	
理 事	한국화이자(주)	金 仁 俊	
理 事	바이엘코리아(주)	빌프리트	
理 事	대동신약	申 光 浩	
理 事	(주)삼지약품	高 濂	
監 査	(주)신일화학	洪 完 杓	유 임
監 査	(주)조양축산	李 炳 石	유 임

20. 대한수의사회 공로패 수상

협회 기획조사부 부서장 신형철은 1996년 2월 2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시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 관리위원'으로써 수의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받았다.